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30

2016년 11월 30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외 9명

나. 발 의 일 : 2016년 10월 27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0월 31일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 원 철 의원)

가. 제안 이유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및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합병·분할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 기본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6. 11. 4 ~ 2016. 11.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1] 및 제105조의2[2]와 제114조[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안 제12조제2항 신설) 하려는 것인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 경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제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보임.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은 173개(2016.10.28. 기준)임.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3)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신 설>	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분할을 제외한다.)

○ 또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필요성 증대와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차별적 과세특례, 목적사업 활용비용의(교육 및 비지정기부금) 제한적 비용 인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세제 개선이 요청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00분의 50 경감 규정 마련

(안 제12조 제2항 신설)

○ 안 제12조제2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인바, 종전 관련 법령(지방소득세법)에 의한 공제·감면이 폐지되었으므로 서울시 조례규정을 통해 시정방향에 맞는 자율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국세의 세제개선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재무국 세제과)는 현재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2016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금액은 총 5천5백만원으로 이중 50%가 경감될 경우 매년 2천7백여만원의 지방소득세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0년까지 매년 5% 성장 가정시 1억7천여만원의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

※ 2016년 10월 기준,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173개중 37개 업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서울시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현황〉

구 분	합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9	9,231	7	994	15	2,746	27	5,491
사회적협동조합 등	49	9,231	7	994	15	2,746	27	5,491

출처 : 서울시 세무과 제공자료(서울시 세무-22674호, '16.10.21 기준)

○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로서 구성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정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게되므로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성격 또는 조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부칙규정은 시행일과 적용시한(2018.12.31)만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사업연도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연도에 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부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수 정 검 토 안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	<부칙>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현 행	수 정 검 토 안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감면대상 사업연도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사업 개시연도에 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적용시한”을 “적용례”로 하고,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안 제2조).

○ 안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함(안 제3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0 관 련

제 안 년 월 일 : 2016년 12월 일
제 안 자 : 행 정 자 치 위 원 장

1. 수정이유

○ 감면대상 사업연도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사업 개시연도에 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 중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생략)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